학 칙

1998년 03월 01일 제정 1999년 03월 01일 개정 1999년 08월 30일 개정 2000년 03월 01일 개정 2000년 08월 01일 개정
2001년 03월 01일 개정 2001년 08월 27일 개정 2004년 03월 01일 개정 2007년 08월 01일 개정 2007년 12월 01일 개정
2008년 02월 01일 개정 2008년 12월 30일 개정 2009년 03월 01일 개정 2009년 11월 01일 개정 2010년 09월 01일 개정
2010년 12월 01일 개정 2011년 03월 01일 개정 2012년 01월 01일 개정 2012년 06월 01일 개정 2015년 08월 24일 개정
2015년 10월 29일 개정 2015년 11월 23일 개정 2016년 02월 23일 개정 2017년 09월 01일 개정 2017년 11월 03일 개정
2019년 08월 23일 개정 2019년 11월 06일 개정 2022년 01월 25일 개정 2022년 06월 09일 개정 2022년 10월 27일 개정
2024년 10월 2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구원과 세계복음화에 봉사할 지도적 전문인격을 도야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기독교 사업에 공헌할 자를 양성하여 영적성장과 인류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교는 건신대학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라 한다.
<개정 2015.08.24>

제2조의 2(위치) 본 대학교는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23에 둔다.
[본조신설 2017.09.01.]

제3조(과정) ① 본 대학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위과정에는 학과 또는 전공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 및 정원)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9., 2017.11.03. 2019.11.06.>

제5조(수업) 본 대학교의 수업은 전일제로 실시한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2년(단, 목회학석사과정은 3년)
2. 박사학위과정
   가. 전문박사학위과정 : 3년
   나. 학술박사학위과정 : 3년
3. 신학 석박사통합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 : 4년

제7조(재학연한)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편입학자는 본 대학교에서 수업할 연한,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에 수업할 연한)의 1배반으로 한다.

①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9조(학기) ①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누며 방학기간에 계절수업을 둘 수 있다.

1.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위 학기시작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② 계절수업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2.01.>

제10조 <삭 제> <개정 2008.02.01.>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④ 원격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3.01.>

제12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일 (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② 개교기념일

③ 여름방학

④ 겨울방학

제13조(휴업일의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휴업일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일은 제11조의 수업을 손상하지 않는 한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의 수업일수와 관계없이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휴업기간의 실습) 휴업일이라도 필요시는 실험·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입 학

제15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자격) ① 본교 석·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개정 2015.10.29.>
   가. 국내·외 정규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정규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석박사통합과정 <개정 2015.10.29.>
   가. 국내·외 정규대학의 학사학위와 M. Div.학위 소지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각 전공별 추가 자격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학원서 (소정양식)
② 세례(침례) 증서 사본 (소정양식)(목회학석사과정에 한함)
③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④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⑤ 기타 입학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단, 본 대학교 졸업자는 ③, ④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와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되 절차,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09.01.>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입학사정회를 두되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학사정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7.09.01.>

제20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소정 납입금의 납부 및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전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자격은 각 과정별로 해당학기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제22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때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재입학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등 록

제23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 납부로써 완료된다.
③ 수강신청은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강과목의 변경) 수강승인된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동안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휴학 · 복학 · 퇴학 · 제적

제2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학기의 납입금을 복학 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그 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 1년 (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은 재학기간 중 2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23.>

제27조(군입대 휴학)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 2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의 2(육아 휴학)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연속으로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09.01.]

제28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복학하여

야 한다.

제29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7.09.01.신설]

제30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①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② 학력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③ 휴학기간을 만료하고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④ 4주 이상 무단 결석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성의한자.
⑤ 타교에 편입한 자
⑥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⑦ 교학처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⑧ 근신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⑨ 기타 학칙을 위반한자.

제7장 교과 · 수업 · 학점 · 졸업

제31조(교과목 구분) 본 대학교의 교과는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32조(교육과정 편성)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09.01.>

제33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34조(교과이수단위)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5조(수강학점) ① 학생의 매학기 취득 제한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9학점 (단, 목회학석사과정(M. Div.)은 18학점) <개정 2017.11.03.>

2. 박사학위과정: 9학점 <개정 2015.11.23.>
3. 석박사통합과정 : 9학점

② 학생은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36조(편입학점 인정) 편입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는 전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사과정은 본 대학교 졸업학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목 및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19.08.23..>

제8장 학업성적 및 시험

제37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38조(시험방법) 시험은 필답에 의하여 시행하되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구술 또는 논문 등에 의할 수 있다.

제3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등급으로 표시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제 1항의 평가비율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40조(응시자격) 각 교과목의 당해 학기 실제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제41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교학처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내에 시행하며, 성적취득은 B+이하로 한다.

제42조(성적분류) 성적은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음 기호로 표시한다.

등급	점 수	평점	등급	점 수	평점	등급	점 수	평점
A+	97-100	4.5	A0	94-96	4.3	A-	90-93	4.0
B+	87-89	3.5	B0	84-86	3.3	B-	80-83	3.0
C+	77-79	2.5	C0	74-76	2.3	C-	70-73	2.0
F	0-69	0						

제43조(학점인정) C 학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고 F는 낙제로 한다.

제44조(학점정정 및 취소) 인정된 학점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졸업생으로서 본 항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그 학위를 박탈한다.

제9장 졸업· 수료· 유급

제45조(졸업학점) ① 본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30학점 (단, 목회학석사과정(M.Div.)은 90학점) <개정 2017.11.03.>
2.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54학점) <개정 2015.11.23., 2017.11.03.>

② 졸업에 필요한 평균평점은 2.0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졸업의 시기는 매년 전,후기로 할 수 있다.

제46조(학위) ① 본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각종 시험에 통과한 후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였거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5.10.29., 2017.11.03.>
(단, 신학석사과정(Th. M.)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이며 목회학석사과정(M. Div.)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성서시험을 통과한 후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소정의 학점 취득과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개정 2017.11.03.>

②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47조(유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된다.

① 평점이 2.0 이하인 자.

② 출석을 거부한 자.

제48조(과정수료) ① 박사과정의 수료는 3년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 등록하고 5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수료는 2년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목회학석사과정(M. Div.)은 3년 이상 등록하고 9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03.]

제49조(학년인정) 각 학년별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 : 1학년 15학점 이상, 2학년 30학점 이상 (단, 목회학석사과정(M. Div.)은 1학년 30학점이상, 2학년 60학점 이상, 3학년 90학점 이상) <개정 2017.11.03.>

② 박사학위과정 : 1학년 12학점, 2학년 24학점 이상, 3학년 36학점 이상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재학기간을 통하여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신앙에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처분을 한다.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③ 시험(과제를 포함)에 부정행위를 한 자.

④ 학칙을 위반하여 교규를 문란케 한 자.

⑤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하여 선동한 자.

⑥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제11장 외국인학생 ·연구과정

제52조(외국인학생 입학) 학력과 신앙을 구비한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 16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정원 외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외국인학생 편입학) 학력과 신앙을 구비한 외국인이 정규학생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정규학생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편입시킬 수 있다.

제54조(외국인학생 학칙준용)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55조(연구과정) ①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정도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위와 관계없이 수강을 원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② 연구과정은 신학전공에 한하여 학생을 선발(이하 "연구생"이라 한다.)한다.

③ 연구과정의 교과과정은 석(박)사 학위과정에 준하며, 연구생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석(박)사 학위과정에 준한다.

④ 연구과정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연구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서(별제 제4호 서식)를 교부하며,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9.01.]

제12장 장애학생

[신설 2015.08.24.]

제56조(장애학생 입학) 학력과 신앙을 구비한 장애학생이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 16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7조(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은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8조(학칙 준용)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13장 공개강좌

제59조(공개강좌) 본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제60조(공개강좌 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주제, 기간, 수강자격,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제61조(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장 납입금

제62조(입학금) 입학(편입 및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액의 입학금을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납입금 납부의무)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납입액과 납입기간) ①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에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다.

② 논문비 등 연구에 대한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납입금 반환) ① 한 번 납입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별표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7.09.01.]

제15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66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생으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금여 규정에 따라서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2015.10.29.개정]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67조 <삭 제> <개정 2011.03.01.>

제68조 <삭 제> <개정 2017.11.03.>

제69조(학위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위논문제출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03.>

1. <삭 제> <개정 2017.11.03.>
2.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3. 학업성적의 종합평균 평점이 3.0이상인 자
4.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한함) [신설 2017.11.03.]
5.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11.03.>
6.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 자 <개정 2017.11.03.>

제70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의 제출은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논문계획서 제출
② 논문지도교수 선정
③ 연구발표 및 심사
④ 학위논문 제출

제71조(논문제출 기한) 논문제출 기한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로 한다.

제72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을 둔다.

② 호선에 의하여 1인의 심사위원장을 두어 진행하게 한다.
③ 합격의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3조 <삭 제> <개정 2015.10.29.>

제74조(학위수여) 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한 증서로 한다.

제17장 학생활동

제75조(학생회 설치)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진리에 입각하여 자치능력을 기르고, 배우면서 선교하는 대학원생으로서의 사명완수와 전문적인 기독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건신대학원대학교 학생회 (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6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한다. <개정 2015.10.29.>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회칙의 제(개)정 과 예(결)산등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77조(학생지도) 학생지도위원회는 매 학년 초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하되 학생을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8조(학생회활동의 정지)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79조(회원 및 회비) 본 대학교의 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활동사전승인) 학생회·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제 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회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②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③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④ 외부인사의 교내 초청

제81조(간행물) 학생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고자 하는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 <삭 제> <개정 2015.10.29.>

제83조(학생단체의 등록) 각종 학생단체는 매학기 초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생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장 직제

제84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학교법인 복음신학원의 정관 직제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9.>

제84조의2(산학협력단) [신설 2022.6.9.]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19장 교수회

제85조(교수회) 본 대학교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86조(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총장・부총장・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장의 임명에 의해 겸임교수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7.09.01.>

제87조(소집 및 의결)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3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8조(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개정 2015.10.29.>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설치·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제89조(회의록) 교수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0장 대학원위원회

<개정 2017.09.01.>

제90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1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교직원으로 하며 그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2.6.9.>

제91조의2(기능)

①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②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⑤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본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2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9.01.>

제9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1장 부설기관

제94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기관을 설치한다. 단, 부설

기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9.01.>

① 도서관

② 건신대학원대학교 출판부

③ 건신대학원대학교 학보사

④ 오순절신학연구소

⑤ 평생교육원

⑥ 건신상담연구소 <개정 2015.10.29., 2017.09.01.>

⑦ 건신상담심리센터 [신설 2017.09.01.]

⑧ <삭 제> <개정 2015.10.29.>

⑨ <삭 제> <개정 2015.10.29.>

⑩ 목회연구원

⑪ 대안교육연구소 <개정 2017.09.01.>

⑫ 대안교육센터 우리 동네 <개정 2017.09.01.>

⑬ 건신예술치료연구소 <개정 2017.09.01.>

⑭ 건신미용연구소 <개정 2017.09.01.>

⑮ 건신사회복지연구소 <개정 2017.09.01.>

⑯ <삭 제> <개정 2017.09.01.> <개정 2022.6.9.>

⑰ 교회지도자양성교육원 [신설 2017.09.01.]

⑱ 건신인권센터 [신설 2022.10.27.]

제94조의 2(도서관)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에 따라 도서관을 설치·운영을 하며, 도서관장을 둔다.

②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자료의 수집·관리, 발전계획 수립·시행,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서의 배치·교육, 도서관 시설·자료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장 학칙 제·개정

[신설 2017.09.01.]

제95조(학칙 제·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01.]

제96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09.01.]

제9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학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학칙 제·개정안의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9.01.]

제98조(심의, 의결 및 공포) ①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칙의 공포는 제1항의 절차가 종료된 후 총장이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7.09.01.]

제23장 강사 및 겸임교수 등

[신설 2019.08.23.] [종전 제23장은 제24장으로 이동]

제99조(임용규정) 강사 및 겸임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08.23.] [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 <2019.08.23.>]

제24장 기타사항

<개정 2017.09.01.> [제23장에서 이동 <2019.08.23.>]

제100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9.01.> [제9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는 제101조로 이동 <2019.08.23.>]

제101조(시행세칙) 본 학칙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9.01.>

[제100조에서 이동 <2019.08.23.>]

부 칙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199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200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아동학과는 2008년 12월 30일자로 폐과하되,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아동학과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정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종교학석사과정은 2009년 3월 1일자로 폐지하되,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종교학석사과정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7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35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69조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과, 학위명 및 정원 <개정 2015.10.29., 2017.11.03., 2019.11.06., 2022.10.27., 2024.10.29.>

<table>
<tr><th>과정</th><th>구분</th><th>학과(전공)</th><th>학위명</th><th colspan="2">정원</th></tr>
<tr><td rowspan="2">박사
학위</td><td rowspan="2">박사원
과정</td><td>구약신학전공
신약신학전공
조직신학전공
영성신학전공
설교학전공
선교학전공
오순절신학전공
역사신학전공
상담심리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문화예술치료학전공
미용치료학전공
대안교육학전공</td><td>철학박사
(Ph. D.)</td><td colspan="2" rowspan="2">23명</td></tr>
<tr><td>선교학전공</td><td>선교학박사
(D. Miss.)</td></tr>
<tr><td rowspan="8">석사
학위</td><td rowspan="3">신학
대학원
과정</td><td rowspan="3">신학과</td><td>신학석사(Th. M.)</td><td colspan="2" rowspan="3">23명</td></tr>
<tr><td>목회학석사(M. Div.)</td></tr>
<tr><td>목회상담학석사(M. A.)</td></tr>
<tr><td rowspan="5">일반
대학원
과정</td><td>상담심리학과</td><td>상담심리학석사(M. A.)</td><td>8명</td><td rowspan="5">44명</td></tr>
<tr><td>대안교육학과</td><td>교육학석사(M. A.)</td><td>12명</td></tr>
<tr><td>문화예술치료학과</td><td>예술치료학석사(M. A.)</td><td>8명</td></tr>
<tr><td>미용치료학과</td><td>미용치료학석사(M. A.)</td><td>8명</td></tr>
<tr><td>사회복지학과</td><td>사회복지학석사(M. S. W.)</td><td>8명</td></tr>
</table>

(별지 제1호)

석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 학석사( )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한다.

년 월 일

건신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 박사 ○ ○ ○

위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 )의 학위를 수여한다.

년 월 일

건신대학원대학교총장 ○○ 박사 ○ ○ ○

(별지 제2호)

석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학석사( )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한다.

년 월 일

건신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 박사 ○ ○ ○

위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 )의 학위를 수여한다.

년 월 일

건신대학원대학교총장 ○○ 박사 ○ ○ ○

(별지 제3호)

박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학박사( )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한다.

년 월 일

건신대학원대학교 박사원장 ○○ 박사 ○ ○ ○

위 인정에 의하여 학박사( )의 학위를 수여한다.

년 월 일

건신대학원대학교총장 ○○ 박사 ○ ○ ○

(별지 제4호) [신설 2017.09.01.]

제 호

이 수 증 서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건신대학원대학교에서 연구생으로 _____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건신대학원대학교 총장

(별지 제5호) [신설 2017.09.01.]

제 호

연구실적 증명서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건신대학원대학교에서 개설한 _____학과의 연구생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하였고 그 실적이 양호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건신대학원대학교 총장

(별지 제6호) [신설 2017.09.01.]

제 호

이 수 증 명 서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건신대학원대학교에서 개설한 _____ 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건신대학원대학교 총장